

사 업 명
대통령선거관리 (1131-30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0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대통령선거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대통령선거관리	-	17,058	17,058	296,884	266,422	249,364	1,461.9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선거관리일반) 동 내역사업은 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, 물적 기반 구축·운영을 위한 것임
- (선거운동관리) 동 내역사업은 선거벽보 첩부·철거, 선거공보 발송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
- (사전투표관리)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사전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전투표사무 수행인력, 사전투표소 설비, 사전투표시스템 등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한 것임
- (선상투표관리) 동 내역사업은 (사전)투표일에 선박에 승선하여 (사전)투표소에서 (사전)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상투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
- (투표관리)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투표사무 수행인력, 투표소 설비·운영을 위한 것임
- (개표관리)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개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개표사무 수행인력, 개표소 설비 등을 위한 것임
- (계도홍보) 동 내역사업은 공명선거 문화정착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후보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
- (위법행위 예방단속) 동 내역사업은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홍보·신고제보·조사단속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, 관련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
- (인터넷선거보도심의) 동 내역사업은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각종 선거보도를 모니터링하고,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·조치하기 위한 것임
- (선거방송토론관리) 동 내역사업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후보자 대담·토론회 및 정당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·진행하기 위한 것임
- (선거여론조사심의) 동 내역사업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·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고,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심의·조치하기 위한 것임
- (당내경선) 정당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지원
- (정책선거) 동 내역사업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후보자의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것임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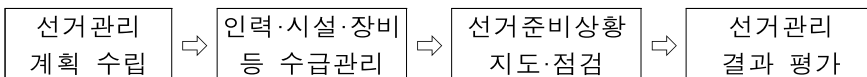
- ① 법령상 근거 : 공직선거법 제277조(선거관리경비)
 - 대통령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
 -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본예산에 편성하되,
- ② 추진경위 : 제1대~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2021년~2022년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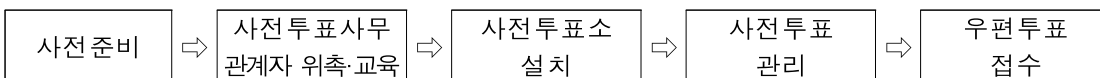
3) 사업 집행절차

(선거관리일반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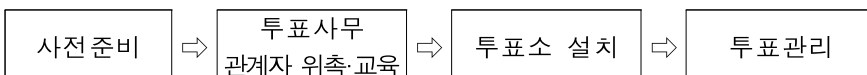
(사전투표관리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

(투개표관리)

- 투표관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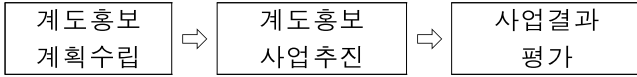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

- 개표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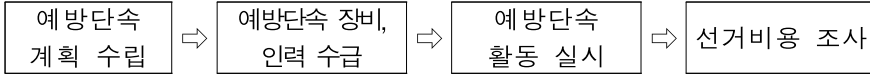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

(계도홍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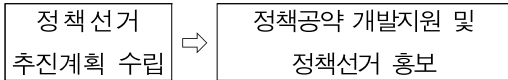


(위법행위 예방단속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

(정책선거 추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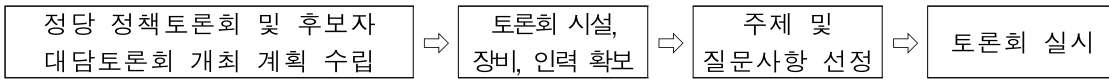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

(인터넷선거보도심의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

(선거방송토론관리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,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등

(선거여론조사심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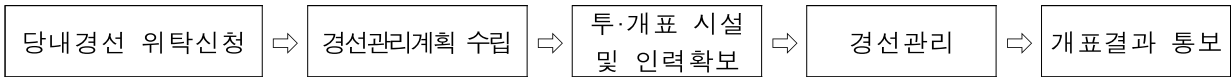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, 선거여론조사 사무편람 등

(선거소송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 등

(당내경선관리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등

사 업 명
국회의원선거관리 (1131-30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1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국회의원거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국회의원선거관리	241,659	-	-	164	30	30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선거구획정위원회의) 동 내역사업은 2024년 실시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·검토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및 그 사무국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직선거법」 제24조, 제24조의2, 제25조
- 「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

② 추진경위

- '18년 9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설치
- '20년 3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보고서 채택·제출
- '22년 9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사무국 설치(예정)
- '22년 10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·운영(예정)
- '23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(선거구획정 지연 시 최대 12월)
- '24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(선거구획정 지연 시 최대 3월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
 - *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·운영기간 :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 ~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
 - * 사무지원조직 설치 :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선거구획정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추진절차	시행주체
① 확정위원회 설치	중앙선관위
↓	
② 자료수집·조사활동	확정위원회
↓	
③ 확정안 제출	확정위원회
↓	
④ 국회의결	국회의장

사 업 명
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(1131-30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2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	-	140	140	20,326	16,294	16,154	11,538.6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선거관리일반) 동 내역사업은 동시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, 물적 기반 구축·운영을 위한 것임
- (사전투표관리)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사전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전투표사무 수행인력, 사전투표소 설비, 사전투표시스템 등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한 것임
- (투·개표관리) 동 내역사업은 원활한 투·개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투·개표사무 수행인력, 투·개표소 설비, 투·개표시스템 등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한 것임
- (계도홍보) 동 내역사업은 공명선거 문화정착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후보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
- (위법행위 예방단속) 동 내역사업은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홍보·신고제보·조사단속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, 관련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
- (정책선거 추진) 동 내역사업은 정책선거 정착을 위해 후보자의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홍보하기 위한 것임
- (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) 동 내역사업은 인터넷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각종 선거보도를 모니터링하고,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심의·조치하기 위한 것임
- (선거방송토론관리) 동 내역사업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후보자 대담·토론회 및 정당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·진행하기 위한 것임
- (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) 동 내역사업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·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를 모니터링하고, 불공정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심의·조치하기 위한 것임
- (선거소송) 동 내역사업은 선거소송 담당자를 교육하고, 선거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것임
- (당내경선관리) 동 내역사업은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것임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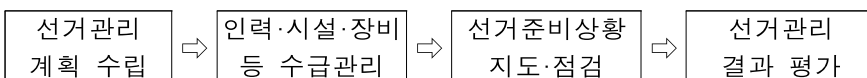
- ① 법령상 근거 : 공직선거법 제277조(선거관리경비)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(교육감의 선출)
 - 지방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
- ② 추진경위 : 제1회 ~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2021 ~ 2022년(4년 주기사업)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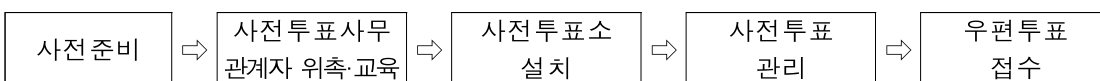
3) 사업 집행절차

(선거관리일반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

(사전투표관리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

(투개표관리)

- 투표관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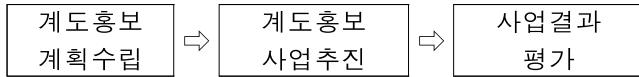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

- 개표관리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

(계도홍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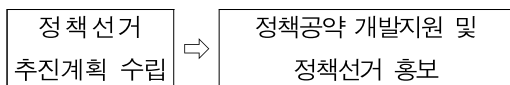


(위법행위 예방단속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

(정책선거 추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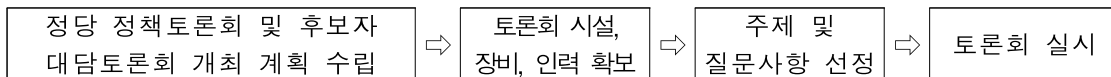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,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

(인터넷선거제도심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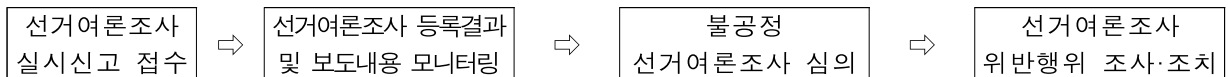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

(선거방송토론관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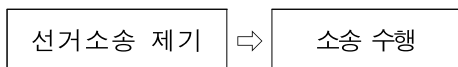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,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등

(선거여론조사심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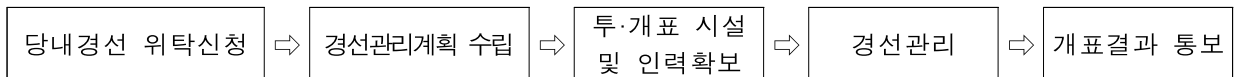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, 선거여론조사 사무편람 등

(선거소송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공직선거관리규칙 등

(당내경선관리)



※ 적용 법령 등 : 공직선거법,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등

사 업 명
재보궐선거관리 (1131-30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3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재보궐선거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재보궐선거관리	-	170	170	340	2,405	2,235	1,314.7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선거관리일반) 재보궐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경비임
- (공직선거후보자추천 경선관리)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공정하게 위탁·관리하기 위한 것임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공직선거법 제277조(선거관리경비),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(교육감의 선출)
- ② 추진경위 - 매년도 재보궐선거관리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(2022)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추진절차	시행주체	절차내용
① 예비후보자 등록	선거구 위원회	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안내 및 접수 등
↓		
② 선거인명부 작성감독	각급 위원회	선거인명부 작성 안내 및 작성결과 감독 등
↓		
③ 후보자 등록	선거구 위원회	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안내 및 접수 등
↓		
④ 선거운동 관리	각급 위원회	선거운동 방법 안내 및 위반행위 예방·단속 등
↓		
⑤ 투·개표 관리	각급 위원회	투·개표 관련 시설·인력·장비 확보 및 운영 등
↓		
⑥ 당선인 결정	선거구 위원회	당선인 결정

사 업 명
재외선거관리 (1131-305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5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재외선거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재외선거관리	5,365	10,687	10,687	10,493	7,173	△3,514	△32.9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재외선거관리) 재외선거 위원회 운영, 신고신청 접수, 투표표 관리 등 「공직선거법」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른 재외선거관리
- (재외선거 제도·홍보) 언론매체, 인쇄물, 시설물,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외선거 홍보
- (재외선거 예방·단속) 재외선거 오프라인 및 사이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·단속
- (재외선거 인력운영) 재외선거관 파견에 따른 업무·체재경비 지원

2)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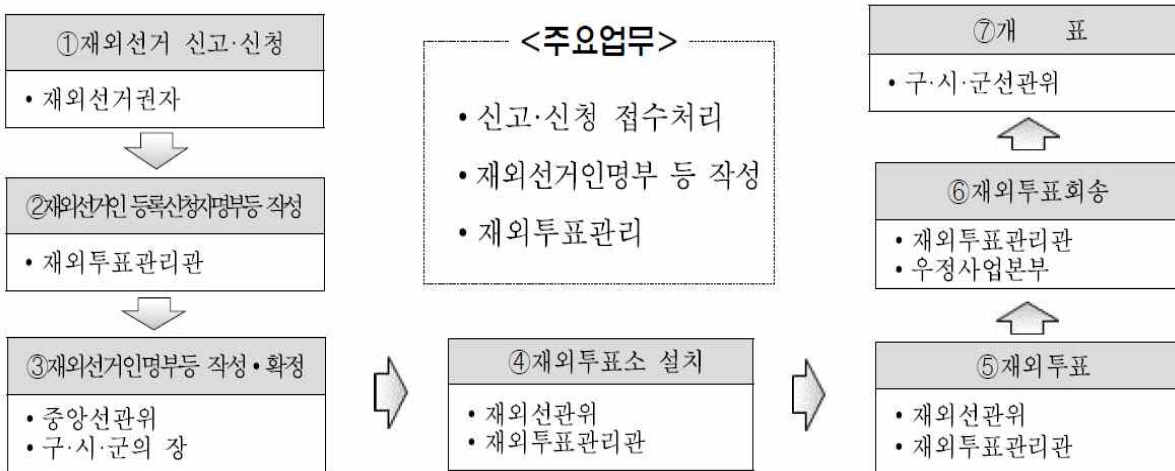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「공직선거법」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
 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(위원회의 직무)
 - 공직선거법 제218조(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)
 -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
 -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(국외부재자 신고)
 -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(재외선거인 등록신청)
 -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7(재외투표소의 설치·운영)
 -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1(재외투표의 회송)
 -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7(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)
 -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(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)
- ② 추진경위
 -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('09. 2. 12.)
 - 제20대·제21대 국선 및 제18대·제19대 대선 재외선거 실시
 - 재외선거관 재외공관 직무파견
 - 1차(55명) : 장기('11. 4. ~ '13. 1.)
 - 2차(20명) : 단기(15명, '15. 6. ~ '16. 5), 장기(5명, '15. 7. ~ '18. 6.)
 - 3차(17명) : 단기파견자('17. 2. ~ '17. 6.)
 - 4차(20명) : 단기파견자('19. 6. ~ '20. 5.)
 - 5차(22명) : 단기파견자('21. 4. ~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위탁선거관리 (1131-306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6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위탁선거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위탁선거관리	247	179	179	761	226	47	26.2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위탁선거관리) 「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탁선거관리의 통일적인 업무 수행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,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
- 주민투표법 제3조,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 등

② 추진경위

- '05년 농·축·수·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 위탁관리
- '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'11년부터 재개발·재건축조합 등의 추진 위원회 위원 및 조합임원 선출 위탁관리
- '10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임원선거 지원
- '1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임원선거 위탁관리
- '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공단체등 선거 위탁관리
- '15년부터 농(축협 포함)·수·산림조합선거 동시 실시
- '17. 7 국립대 총장 직선제 전환으로 인한 위탁관리(정부 100대 국정과제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 : 단체의 위탁신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진행

사 업 명
선거보전금 (1131-307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조사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7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선거보전금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보전금	89,728	-	-	136,872	126,760	126,760	순증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선거비용보전)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등 보전을 통한 선거공영제 실현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(선거비용의 보전 등)

② 추진경위

- 헌법 제116조에 따른 선거공영제를 근거로 2000. 2. 16.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비용보전제도 도입
- ('00. 2. 16.)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비용제도 도입
- ('04. 3. 12.)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포상금제도 도입
- ('05. 8. 4.)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 보전
- ('07. 1. 3.)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보전
- ('10. 1. 25.)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보전
- ('15. 8. 13.)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인(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 포함)의 수당과 실비 보전
- ('20. 12. 29.)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저장매체 작성비용 보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○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 청구 → 선관위 비용실사 후 보전·부담금액 지급

사 업 명
선거장비및물품관리 (1131-309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9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공직선거관리	선거장비및물품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장비및물품관리	2,421	4,737	4,737	5,767	2,485	△2,252	△47.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선거장비관리) 선거장비의 효율적 보관·관리 및 이를 위해 선거장비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
- (선거물품관리) 선거물품의 효율적 보관·관리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- 공직선거법 제277조(선거관리경비),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(경비의 부담)
- ② 추진경위
 - 2014. 6. 4.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 통합보관 및 유지보수 실시
 - 2016. 4. 13.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후 투표함·기표대 등 선거물품 통합보관 실시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(2022년)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정당사무지원 (1132-32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0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정당발전지원	정당사무지원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음자	국고보조율(%)	음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정당사무지원	73	290	290	771	266	△24	△8.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정당·후원회 법정사무지원) 내실 있는 정당·후원회 등록사무 처리 및 사무지원 강화
- (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) 정당에 선거·정치제도 연수기회 부여로 정당발전 지원
- (정당·정책연구소 활성화) 정당·정책연구소의 자생력 강화 및 정책연구 개발능력 제공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헌법 제8조
- 공직선거법 제7조
- 정당법 제35조(정기보고), 제38조(정책연구소의 설치·운영)
- 정치자금법 제8조(후원회의등록)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(위원회의 직무), 제19조(경비의 부담)

② 추진경위

< 정당·후원회 법정사무지원 >

- 정당·후원회 등록사무처리 및 회계사무 지원, 정당·후원회의 활동상황 공개

<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 >

- '78년 선진국의 정당, 의회 및 선거관리기관 등 견학 시작
- '05년 시·도당 간부에게도 연수기회 부여
- '07년 연수대상국가를 선진지 위주로 확대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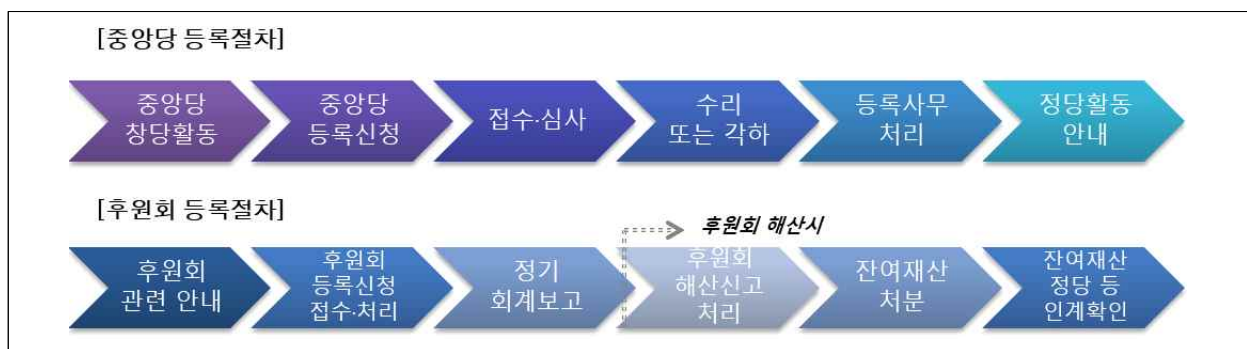
< 정당·정책연구소 활성화>

- '77년부터 정당발전과 공명선거실천방안 등 협의 실시
- '97년부터 업무협의회 대상을 후원회까지 확대하여 실시
- 2004. 3. 12. 신설된 (구)정당법 제29조의3(정책연구소의 설치·운영)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의 자생력 강화 및 정책연구 개발능력 제공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정당보조금 (1132-32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2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정당발전지원	정당보조금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○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	
정당보조금	90,718	46,282	46,282	144,917	143,239	96,957	209.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정당보조금 사업은 정당의 건전한 발전·육성을 위해 정당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정당에 지급하는 사업임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「정치자금법」 제25조 내지 제27조
- ② 추진경위
 - 1981.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경상보조금 도입
 - 2006. 여성추천보조금 지급
 - 2008. 선거보조금 지급
 - 2010. 장애인추천보조금 지급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정치자금법 제27조의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
- 사업시행방법 :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추진절차	시행주체	절차내용
① 국고보조금 지급준비	중앙위원회	국회 및 정당에 의석수 조회·확인
↓		
② 보조금 배분·지급	중앙위원회	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배분대상 정당별로 배분·지급
↓		
③ 보조금 지급 통지·공고	중앙위원회	보조금 지급내역 공고 및 당해 정당에 통지
↓		
④ 보조금 지출내역 확인조사	중앙위원회	정당 등의 회계보고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
↓		
⑤ 보조금 반환 및 국고귀속	중앙위원회	정당해산 또는 등록취소시 보조금 지출내역과 그 잔액을 반환토록 조치(미반환시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)

사 업 명
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(1133-33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연수원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0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민주시민의식함양 및지원	2,070	3,521	3,521	3,854	3,147	△374	△10.6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성숙한 선거·정치문화 발전을 위한 선거·정당관계자 연수
- 주권의식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선거·정치분야 유권자, 미래유권자 등 연수
- 국제심포지엄, 국내·외 교류·협력 증진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(위원회의 직무) 및 제14조(선거제도), 제15조의2(선거연수원), 제19조(경비의 부담)
- 공직선거법 제7조(정당·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) 및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
- 정치자금법 제60조(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)
-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(교육·연수방침)

② 추진경위

- '00년 정치교육과 신설
- '06년 선거·정당관계자, 유권자, 미래유권자 대상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
- '13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
- '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 미래유권자연수 확대·강화
- '17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(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)
- '18년 선거연수원 수원 이전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과정 확대·운영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
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 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선거연수원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교육및연구기반조성 (1133-33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연수원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관리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1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교육및연구기반조성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교육및연구기반조성	1,196	1,357	1,357	1,474	1,474	117	8.6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사이버교육·연수) 민주시민교육의 저변 확산 및 위원회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유권자 및 소속 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·제공,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·개선
- (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) 위원회 직원 대상 선거관리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무중심 교육체계 지원
- (선거·정치제도연구) 위원회의 정책적 외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내·외 선거·정치 제도 분석 및 연구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국가공무원법 제50조(인재개발)
-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(인재개발계획의 작성), 제9조(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), 제10조(공무원의자기개발 등)
-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(선거연수원) 및 제19조(경비의 부담)
-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(사이버교육·연수)

② 추진경위

- ('96. 2.) 선거연수원 설치
- ('06. 6.)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·운영
- ('14. 8.)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
- ('15. 9.)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·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 개편
- ('16. 8.) 온라인교육포털 구축 및 온라인 공개강좌 시범 콘텐츠 개발
- ('17. 11.) 선거연수원 확대·이전
- ('19. 12.) 정치관계법규 주요 과목 교육콘텐츠 모바일용 변환
- ('20. 12.) 직무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웹표준 동영상 변환·개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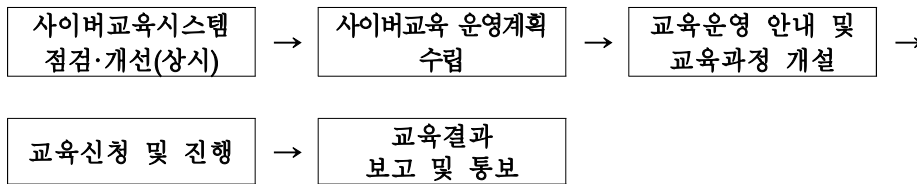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선거연수원

3) 사업 집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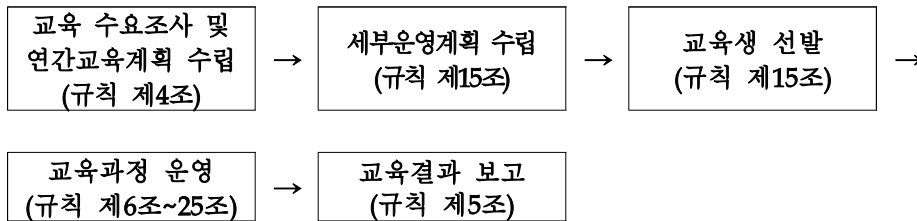
1. 사이버교육과정 운영(사이버교육·연수)

※ 적용 법령 :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,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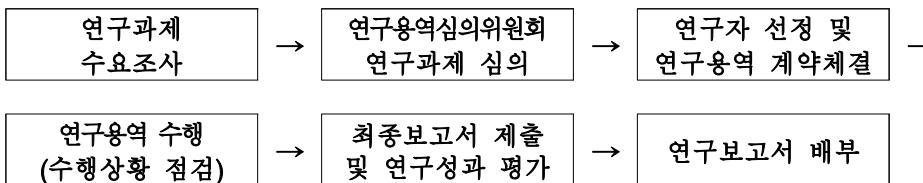
2. 직무교육과정 운영(선거관리전문인력양성)

※ 적용 법령 :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, 선거연수원 운영규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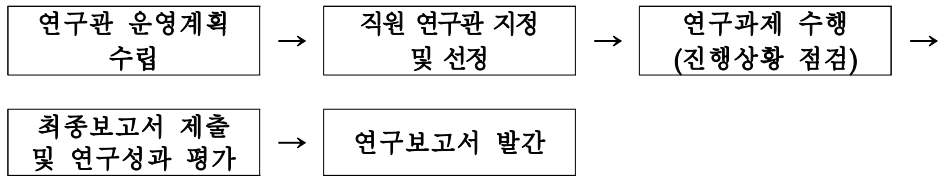
3. 연구용역 관리(선거·정치제도연구)

※ 적용 규정 : 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



4. 연구관 운영 및 보고서 발간(선거·정치제도연구)

※ 적용 규정 :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, 「선거연구」 발행에 관한 규정



사 업 명
공명선거기반조성 (1133-33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홍보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2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공명선거기반조성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	
공명선거기반조성	2,861	3,283	3,283	4,008	2,842	△441	△13.4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)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제도 안내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
- (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) 미래유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주권의식 함양 및 올바른 선거관 확립
- (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) 유권자 주간 홍보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실현 수단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
- (한국선거방송) 선거·민주주의 관련 지식기반 콘텐츠 전파로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
- (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)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(선거제도)
- 공직선거법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제5항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홍보
- 정치자금법 제60조(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)

② 추진경위

- ('97. 공직선거법 개정)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의무화
- ('02. 1. 직제개편) 신설된 시·도 홍보과 및 구·시·군 홍보계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 지원 필요
- ('04. 3. 정치자금법 개정) 법인·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로 정치자금 모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 필요성 대두
- ('05. 8. 정치자금법 개정) 정치자금의 기부·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의무 부여
- ('16. 10.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재구축) 기부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
- ('20. 1. 공직선거법 개정)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선거체험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온·오프라인 상시홍보 필요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 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 : 해당없음

사 업 명
위법행위예방활동 (1133-33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3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위법행위예방활동

□ 사업 성격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	
위법행위예방활동	7,890	14,379	14,379	12,946	12,407	△1,972	△13.7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공정선거지원단 운영)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파악, 예방·안내활동 및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한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
- (위법행위예방단속) 기부행위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풍토 개선 및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
- (사이버위법행위 예방·단속)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유도
- (정치자금조사)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위법행위 조사로 정치자금회계 투명성 제고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10조의2(공정선거지원단)
- 공직선거법 제10조의3(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)
-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(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)
-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(선거범죄의 조사등)
- 정치자금법 제28조(보조금의 용도제한 등)
- 정치자금법 제52조(정치자금범죄 조사 등)

② 추진경위 - 사업 시작년도, 추진배경, 부처별 중점과제, 대통령 공약사항 등

-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신설로 선관위에 선거범죄 조사권 부여(1997. 11. 4.)
- 정당 및 정당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업체까지 조사확대(2002. 3. 7.)
-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 관련 범죄까지 조사 확대(2004. 3. 12.)
-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 확대(5천만 원 → 5억 원)(2006. 3. 2.)
-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상시조사 체제 도입(2006. 5. 31.)
-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(2008. 2. 29.)
-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설치·운영(2014. 1. 1.)
- 정치자금조사 사업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 통합(2016. 1.)

-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(2018. 4.)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- (사이버)공정선거지원단 운영
 - 공개모집 ⇒ 선발·심사 ⇒ 위촉·운영
- 광역조사팀 운영
 - 시·도별 구성 ⇒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정황 파악 ⇒ 중대선거범죄 조사·조치
- 단속직원 위탁교육
 - 교육계획 협의 ⇒ 교육계획 수립 ⇒ 교육실시 ⇒ 결과통보
-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
 -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⇒ 포상금 심사·결정(포상금심사위원회) ⇒ 포상금 지급
- 정치자금조사
 - 위법행위예방활동 ⇒ 회계보고 ⇒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⇒ 조치

사 업 명
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(ODA) (1133-33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4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	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(ODA)

□ 사업 성격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○		100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(ODA)	157	444	444	1,096	574	130	29.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세계 각국의 '민주주의 동반성장'을 위한 ODA사업 추진으로 '지속가능한 굿 거버넌스' 구축
- (국제선거참관 운영) 전환기 민주국가의 민주주의 발전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 선거관리기법을 전파하여 선거관련 지식·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
- (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) 선거관리 역량 강화 및 선거법제 개선 지원을 위해 전환기 민주국가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과정 운영
- (국제개발협력 사전타당성조사) 신규 ODA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 제3조(기본정신 및 목표), 제4조(기본원칙), 제5조(국가등의 의무)
- 「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
② 추진경위 - 사업 시작년도, 추진배경, 부처별 중점과제, 대통령 공약사항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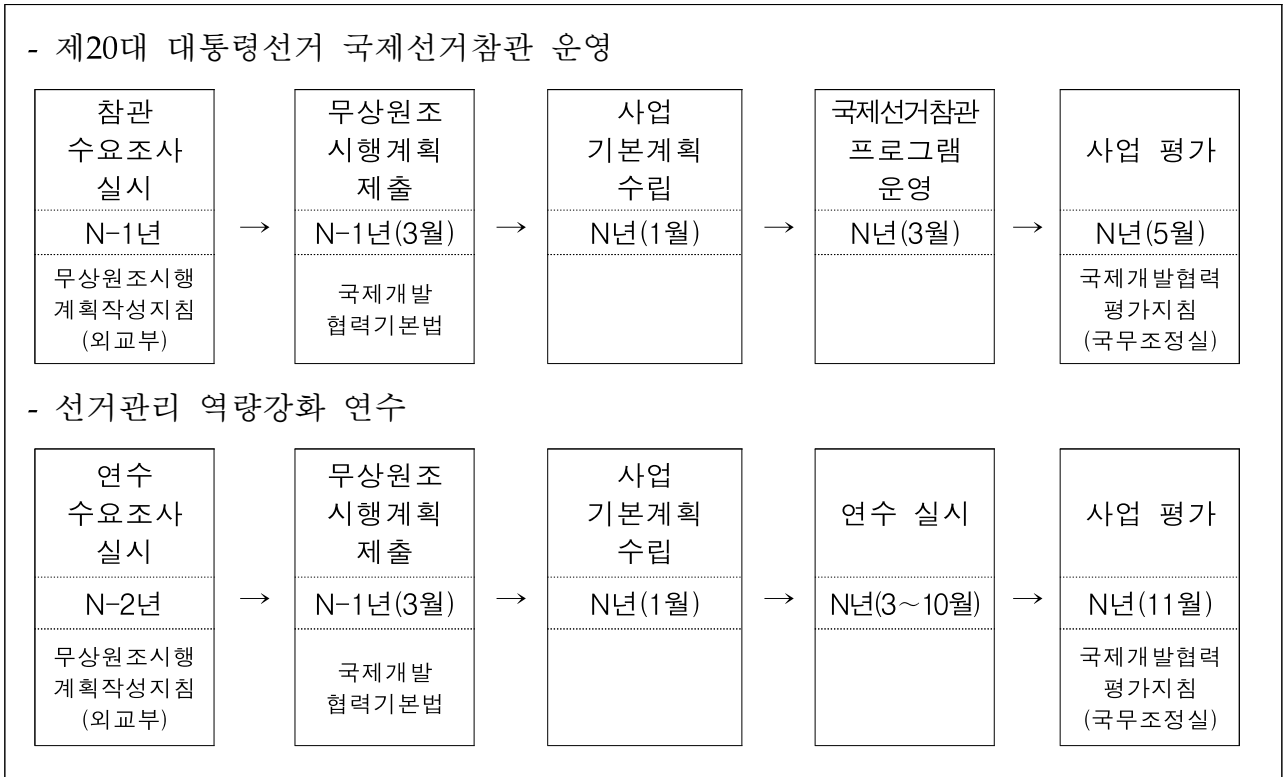
- ('06 ~) 중앙선관위 외국 선거관계자 대상 초청연수사업 실시
 - * 2014년 이후 A-WEB 선거관리역량강화 연수(44회 241개국 736명 참가)
 - ** 연수 수요 증가와 정치권의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확대요구 등으로 선거법제 개선 세미나 도입 및 외국선거관계자 연수 확대
- ('10 ~ '18)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세미나 실시(10회 11개국 103명 참석)
 - *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으로 선정되어 '16부터 KOICA로 이관
- ('13.10.)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주도로 A-WEB 창설 계기 ODA 사업 확대
- ('14 ~) 임기만료 공직선거 국제선거참관 프로그램 운영
 - * 4개 선거 143개기관 304명 참석
 - ** 제21대 국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이버참관 방식으로 운영
- ('15 ~ '18) 해외선거 참관단 운영(17개선거 124개국 277명 참석)
- ('15 ~ '19) A-WEB 주도 선거 IT관련 장비 지원사업 추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,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세계선거기관협의회(A-WEB)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인터넷심의기반조성 (1135-31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인터넷선거보도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심의위원회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13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선거관리지원	인터넷심의기반조성

□ 사업 성격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	
인터넷심의기반조성	262	116	116	216	116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터넷선거보도 심의
-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사전예방
- 불공정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
- 피해구제 및 심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한 공정선거보도 분위기 조성
-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8조(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의무)
- 공직선거법 제8조의5(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)
- 공직선거법 제8조의6(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)
-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

② 추진경위

- 2004. 3. 12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시 제8조의5 및 6 제정
- 2004. 3.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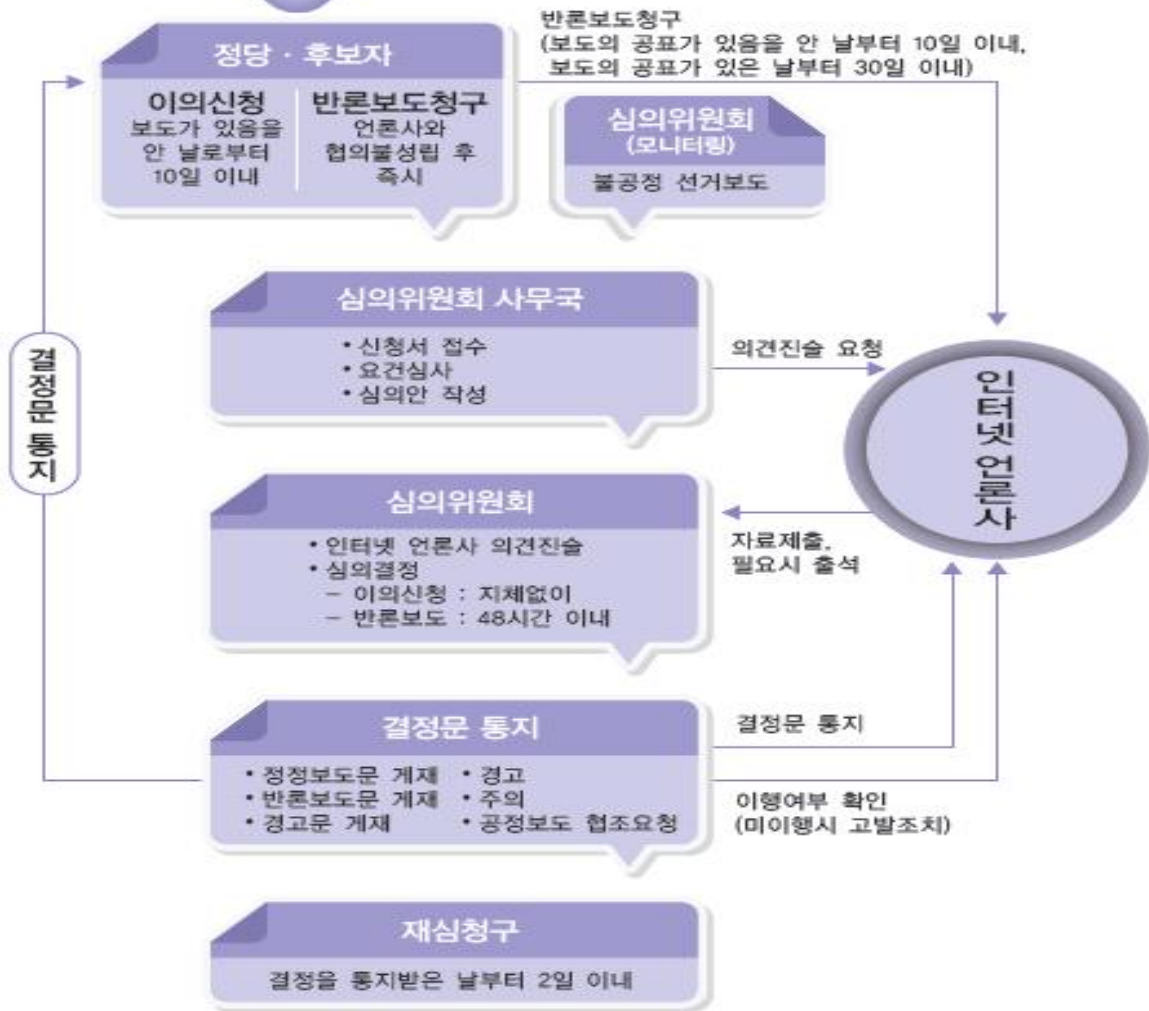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심의흐름도

선거 보도



사 업 명
선거방송토론 (1135-31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중앙선거방송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관위	토론위원회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14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선거관리지원	선거방송토론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	
선거방송토론	385	489	489	489	474	△15	△3.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위원회 운영)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주관·진행을 위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수당 등 지원
- (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) 토론제도 연구 및 민주시민 토론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·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,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유권자 대상 유권자 토론회(민주시민 토론교실) 기획
- (정당정책토론회 개최) 정당의 정견·정책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정당간의 정책 비교·평가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개최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직선거법」 제8조의7(선거방송토론위원회)
- 「정당법」 제39조(정책토론회)
- 「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

② 추진경위

- ('04. 3.)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
- ('05. 8.) 정당법 개정으로 중앙토론위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
- ('05. 11.) 제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
- ('17. 8.)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
- ('18. 8.)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(전국대학생토론대회 및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통합)개최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		정당정책토론회	
추진절차	절차내용	추진절차	절차내용
① 기본계획 수립	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	① 기본계획 수립	정당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
↓		↓	
② 토론주제 공모선정	토론주제 외부 공모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선정	②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	정당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결정
↓		↓	
③ 참가팀 접수선발	사도대회를 통한 선발(고등학생부) 및 접수(대학생부)	③ 초청정당 선정	「정당법」제39조에 의한 초청 정당 선정
↓		↓	
④ 예선·본선 개최	예선·본선 개최	④ 토론주제 수집	정당 및 기관·단체 등을 통한 토론주제 수집
↓		↓	
⑤ 결승전 개최	결승전 개최	⑤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	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
↓		↓	
⑥ 결과보고	대회 결과 보고 및 평가	⑥ 사회자 선정	사회자 선정
		↓	
		⑦ 질문사항 선정	질문사항 선정
		↓	
		⑧ 설명회 개최	참석자 발언 순서 등을 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
		↓	
		⑨ 토론회 진행	정당정책토론회 진행
		↓	
		⑩ 결과보고	정당정책토론회 결과보고 및 평가

사 업 명
선거여론조사심의 (1135-315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중앙선거여론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조사심의위원회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15
명칭	선거의공정한관리	선거관리지원	선거여론조사심의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	
						2021예산 시 소관	
	○	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여론조사심의	255	270	270	347	300	30	11.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·모니터링 운영) 선거여론조사 객관성·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앙여심위 등록관리시스템 및 언론매체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기사, 보도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심의·원자료(Raw data) 분석을 통해 「공직선거법」 및 「선거여론조사기준」의 위반 여부 단속·적발
- (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) 「선거여론조사기준」 개정 및 조사기관·정당·언론관계자 등 안내, 여론조사신고 보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, 공표·보도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·모니터링에 따른 심의, 선거여론조사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접수·신고 등 법정사무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
- (선거여론조사 심의 강화)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실시 및 「공직선거법」·「선거여론조사기준」을 위반한 불법선거여론조사를 조사·조치하며 정당·언론사·여론조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·기준 개정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직선거법」 제8조의8(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)
- 「공직선거법」 제8조의9(여론조사 기관·단체의 등록 등)
- 「공직선거법」 제108조(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)
- 「공직선거법」 제108조의2(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)
- 「공직선거법」 제8조의8(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)
- 「공직선거법」 제261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)제2항 내지 제11항
- 「공직선거법」 제272조의2(선거범죄의 조사 등)

② 추진경위

-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출범(2014. 3.)
- 선거여론조사의 신고 및 등록이 상시화 되었으며, 선거여론조사의 적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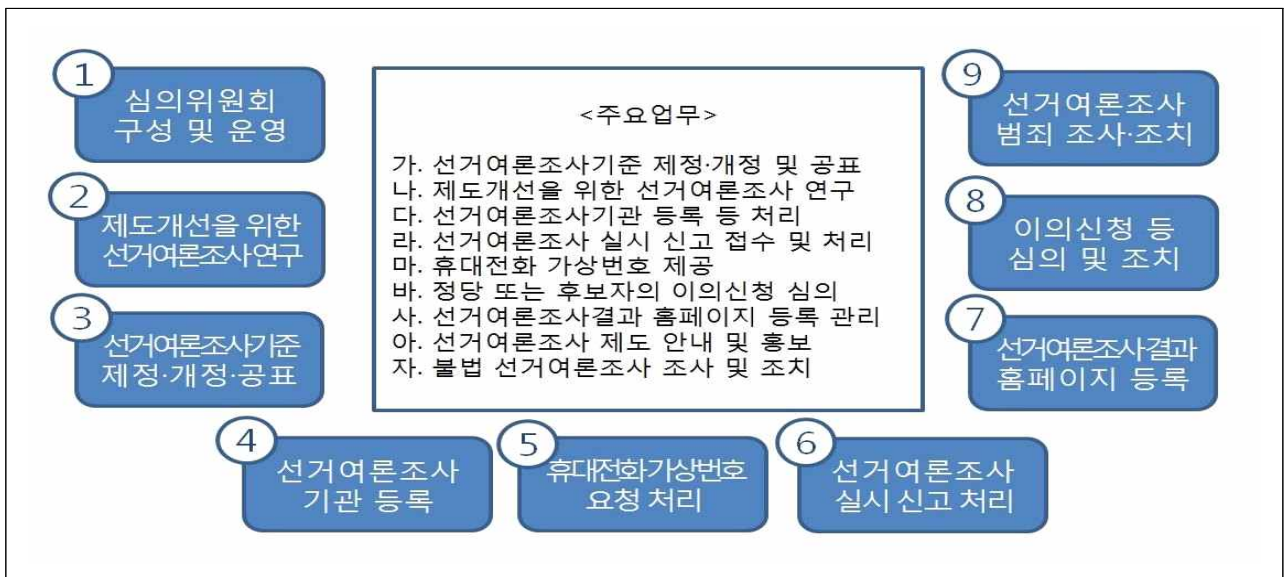
범위가 '정당 지지도·당선인 예상'에서 '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'로 업무 범위 확대(2015. 12.)

-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,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,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·과태료 부과권 등 새로운 업무 대폭 추가(2017. 2.)
-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·신뢰성 평가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접촉률 도입, 응답자 특성표 및 가중값 배율 등 강화(2019. 7.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규모 : 상시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 및 선거여론조사 심의 등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 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및 시·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인건비 (7101-15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01	15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인건비	인건비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인건비	202,433	217,302	217,302	232,513	216,730	△572	△0.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소속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

2) 사업개요

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
3) 사업 집행절차 : 해당없음

사 업 명
위원회기본경비 (7111-25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11	25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본경비	위원회기본경비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위원회기본경비	13,625	15,230	15,230	15,829	15,837	607	4.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 및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의 집행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

2) 사업개요

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: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

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 : 해당없음

사 업 명
법제지원및법규운용 (7132-31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법제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1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법제지원및법규운용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법제지원및법규운용	964	392	392	724	451	59	15.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국회 입법지원, 연구반 운영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한 선거·정치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·제시
- 국가·선거·행정소송, 인사소청 및 행정심판 등 수행
- 공직선거·투표·정당 및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규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·맞춤형 선거안내서비스 제공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(법령에 관한 의견표시 등) 및 제19조(경비의 부담)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(법제국)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1조(법제국)
- 공직선거법 제219조(선거소청), 제222조(선거소송), 제223조(당선소송)
-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(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)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
-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
-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
-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
- 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

② 추진경위

- 위원회 창설부터 소관 법률 제·개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시 제출
- 선거·국가·행정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
- 소청심사위원회,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
- '06년 전화·방문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대국민 법규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안내센터 설치
- '06년 10월 국회의원 등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등을 위한 의정지원과 설치
- '09년 7월부터 법규안내 T/F팀, '10년 1월부터 법규안내센터로 개편
- '13년 법규안내센터와 법규해석과를 해석과로 통합·운영
- '18년 선거안내센터 설치
- 정치관계법 법규운용자료('08, '12, '14, '16, '17, '19)·공직선거법 해설서('14, '16, '20)·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('18) 등 작성·발간

- 「시·도 법규운용 담당자 워크숍」 개최('15, '16, '17, '18) 및 「법규 운용능력 경시대회」 개최('13, '14, '17, '18, '19, '20, '21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

3) 사업 집행절차

- 정치관계법 개선방안 마련 ⇨ 정당, 학계, 시민단체, 법조계, 언론 및 관련 부처 등 의견 반영 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(「선거관리위원회법」 제17조), 정치개혁 특별위원회,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등 입법지원활동(「국회법」 제44조)

사 업 명
선거관리역량강화 (7132-34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선거관리역량강화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관리역량강화	517	890	890	892	845	△45	△5.1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조직역량강화) 연구기능 내실화를 통한 업무혁신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
- (직원 상시학습)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상시학습 실시
- (사무능력 제고)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조직역량강화 : 자체 시행계획
- 직원 상시학습 :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
- 사무능력 제고 :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등

②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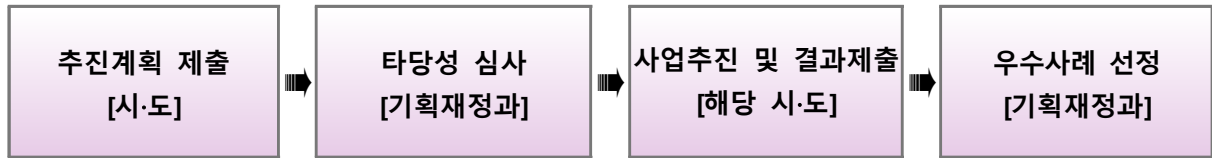
- ('83) 연구분임 운영 시작, 시·도위원회 책임하에 권역분임 자율적 구성·운영
- ('09) 상시학습 운영지침 제정·시행
- ('13) '제안관리시스템' 구축·운영으로 제안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데이터 관리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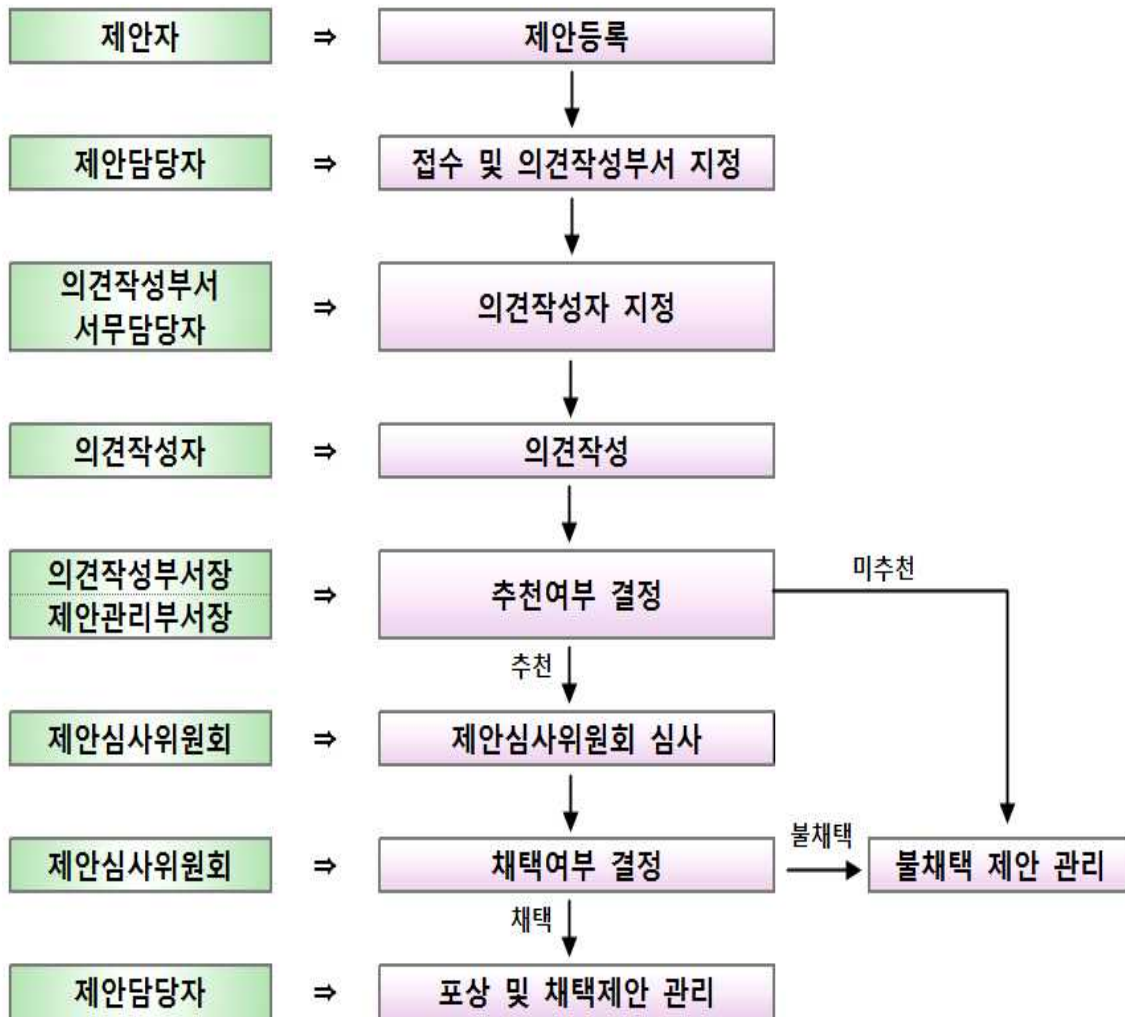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□ 전문성강화 특화사업



□ 제안사무 관리 업무흐름도



사 업 명
시험관리 및 전문성강화 (7132-34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중앙선거 관리위원회	인사과	00	010	011
명칭		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3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0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2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	352	506	506	563	539	33	6.5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능력검정시험 및 경력경쟁채용 등 시험관리) 위원회 6급 직원을 대상으로 법규운용 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선거관리역량을 제고하며,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각종 경력 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여 적기 인력충원 및 다양한 전문인력 확보
- (역량평가 및 제한경쟁심사승진 관리) 5급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등 실시로 승진임용의 공정성 확보 및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
- (법규운용담당 전문교육 관리) 시·도 및 구·시·군 법규운용담당자 실무연수(OJT) 실시로 법규운용 전문성 제고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『국가공무원법』 제4장(임용과 시험), 제6장(능력)
- 『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』 제2장(임용), 제3장(시험)

② 추진경위 - 사업 시작년도, 추진배경, 부처별 중점과제, 대통령 공약사항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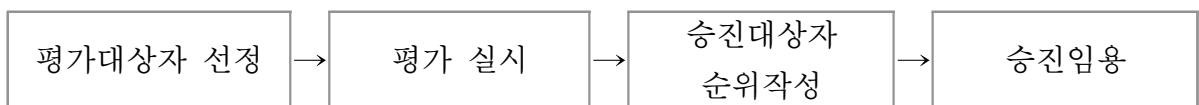
- '09년부터 5급 심사 승진임용제도가 도입되어 초급관리자로서의 사전 자격검증을 위해 매년 6급 대상 능력검정 시험실시
- '13년부터 경쟁력 있는 관리자 선발을 위해 역량평가 제도 도입
- '16년부터 실무자로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 등 위원회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제한경쟁심사승진 제도 도입
- 결원 대체 임기제공무원 및 인터넷선거보도, 사이버선거범죄대응 등의 전문분야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공무원 등 경력경쟁채용 실시
- '11년부터 법규운용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·도위원회 법규운용 담당자 대상 법규운용능력 함양교육 및 경시대회 실시
- '15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7·9급 공채시험 문제은행 보완비용 부담

□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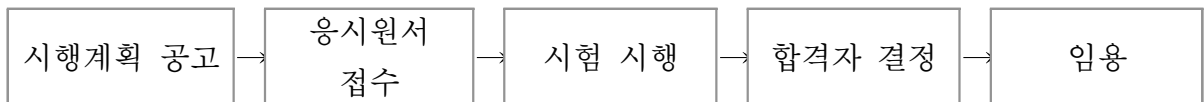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또는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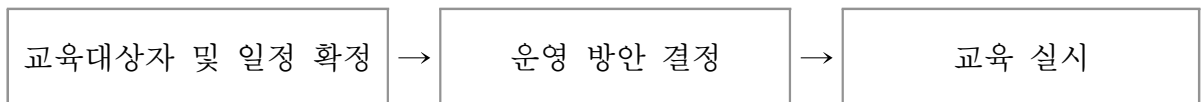
□ 능력검정시험 등



□ 경력경쟁채용시험



□ 법규운용담당 전문 교육



사 업 명
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(7134-34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정보자료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4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	2,154	1,966	1,966	3,243	2,166	200	10.2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기록물관리 및 선거기록관 건립)
- 기록물 체계적·안정적 수집·관리·보존 및 활용

-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투명성 제고
- (선거도서관 관리 및 도서편찬)
 - 도서의 효과적인 수집·정리·보관 및 활용과 Web-DB를 통한 선거·학술자료 제공
 - 선거·정당자료의 수집, 사서편찬, 전시회 개최 등 선거역사 기록·보존·전파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, 「도서관법」
- 「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」, 「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」
- 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 규정」, 「선거·정당 기록물 수집·관리에 관한 규정」, 「선거사·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」

② 추진경위

- (기록물관리)
 - 기록관리시스템 구축(2005. 11.)
 - 기록물 및 선거행정박물 등 DB구축(2006 ~ 2021)
 - 탈산장비 및 비전자기록물 RFID시스템 도입(2020)
- (선거도서관 관리 및 도서편찬)
 - 선거도서관 홈페이지 운영(2007. 1. ~)
 - 도서관리시스템 도입(2009) 및 Web-DB 및 전자책 서비스 개시(2013. 4.)
 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정(2019)
 - 선거도서관 개관 및 RFID도서관리시스템 도입(2020)
 - 「선거·정당 관련 기록물 수집·보존에 관한 규정」 제정(2007. 11.)
 - 「선거·정당 기록물 수집·관리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21. 2.)
 - 선거·정당 행정박물자료 공개 구입(2021. 5)
 - 도서편찬 : 대한민국선거사(제1~7집)·정당사(제1~6집) 발간(1964 ~ 2016)
- (선거기록관 건립)
 - 건축 부지 확보(2019)
 - 선거기록관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건립·운영방안 연구용역(2020)
 - 선거기록관 건립 국유재산관리기금 확보(2021) 및 개관(2025 예정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- 기록물 DB 구축 : 기록물 반출 → 기록물 해철 → 기록물 보수 → 기록물 분류 → 면표시 → 기록물 정리검증 → 기록물철 색인입력 → 디지털작업(스캐닝, 인코딩) → 기록물건 색인입력 → 색인검증 → 기록물 재편철 및 제본 → 시스템 업로딩 및 서가 배치
- 행정박물자료 구입 : 공모 및 접수 → 자료구입위원회 개최(선정·평가·심의) → 구입 예정자료 화상공개 → 계약 및 인수
- 도서 편찬 : 편찬위원회 및 실무단 구성 → 원고 집필 → 교열·감수 → 발간·배부
- 선거기록관 건립
 - 개관 준비 : 건축 기본·실시 설계 → 착공 → 준공 → 내부설비(시설·장비) → 개관
 - ※ 조직 구성·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추진
 -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: 정보화전략계획(ISP)수립 → 시스템 개발·구축(1·2·3차) 및 시설·장비 도입

사 업 명
국제교류협력 (7132-345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5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국제교류협력

□ 사업 성격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○		100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국제교류협력	771	1,187	1,187	1,588	1,108	△79	△6.7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서울국제선거포럼) 위원회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거제도 및 관리 기법 공유를 위해 각국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연례 주최
- (외국 선거참관 및 국제 교류) 각급 위원회 직원을 대상으로 각국 선거제도 비교·연구를 위한 외국 선거참관 지원, 선거 관련 국제적 논의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·발제 지원 및 외국과의 선거외교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
- (A-WEB 운영지원) 중앙선관위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(A-WEB)의 안정적 정착 및 활동·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·운영비 등 지원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8조(기획국) 제2항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7조(기획국) 제4항
- 「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(협의회와의 협력)
- 「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
②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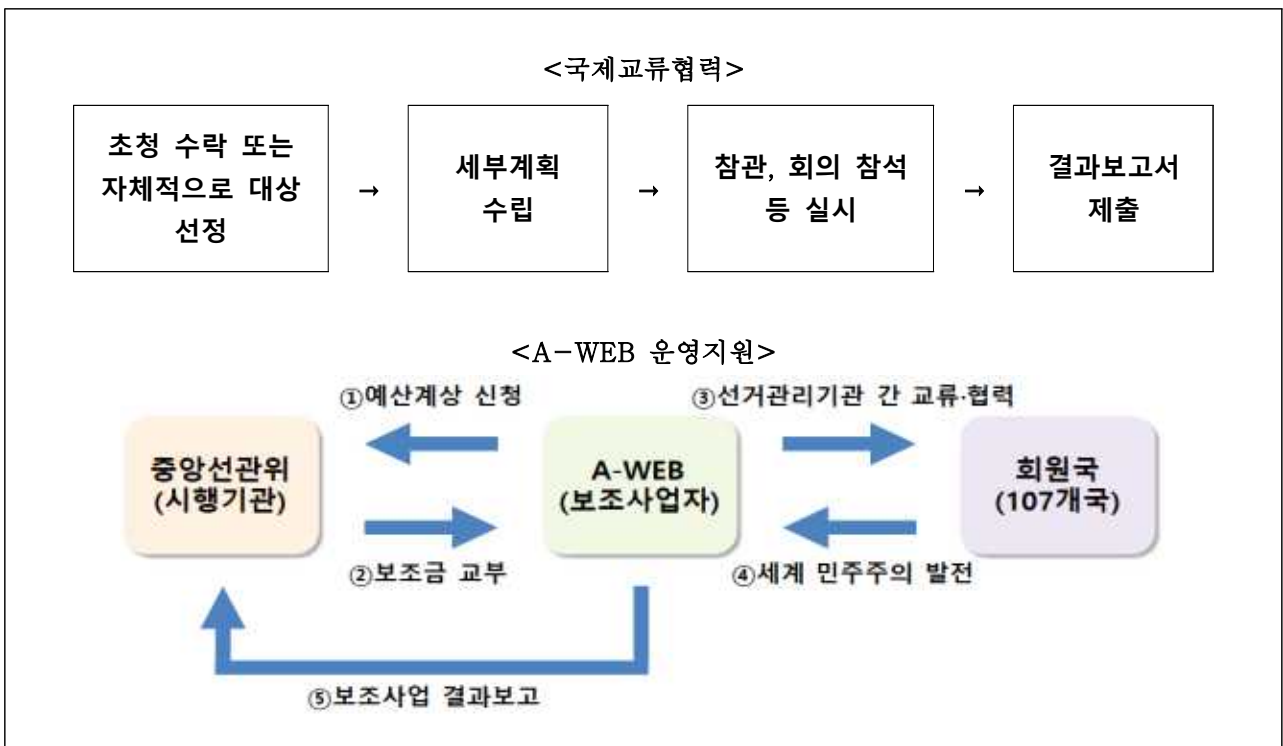
- 외국 선거참관 정례화('07. 01.)
- 국제교류전문인력 선발·양성('08. 01.)
- A-WEB 창설 및 대한민국 사무처 유치('13. 10.)
- A-WEB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('14. 01.)
- 연례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(서울국제선거포럼) 개최 시작('15. 05.)
- A-WEB 운영지원비 국제교류협력 예산에서 지원('14 ~ '15)
- A-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(1133-334)사업으로 이관('16. 01.)
- A-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(1133-334)사업에서 국제교류협력(1133-345)

으로 이관(20. 01.)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, 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세계선거기관협의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(7132-347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감사관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7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

□ 사업 성격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감사활동및 공직윤리확립	136	180	180	294	180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감사활동) 업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, 부당한 관행·조직문화를 개선하며,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위원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·감찰활동을 실시함.
- (공직윤리확립) 공직자 재산 및 병역사항 신고·공개로 청렴공직 이미지를 조성하고,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·확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 함.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자윤리법(시행령·시행규칙 포함)
-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(시행령·시행규칙 포함)
-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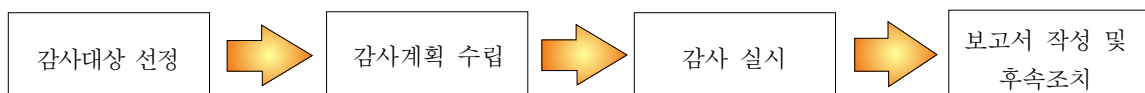
② 추진경위

-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라 각급위원회 감사 및 직무감찰 실시
-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4급 이상 공직자 재산·병역신고 심사
- 각종 비위행위의 예방 및 조사활동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95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실시, 64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수시 감찰 실시, 사안 발생 시 기강감사 실시, 공직자윤리위원회 2회 개최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각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- 감사대상 선정 : 최근 종합감사 미수감 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정

- 감사계획 수립 : 감사 시기, 감사반원 등 결정
- 감사 실시 : 계획에 근거하여 감사 실시
-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: 감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, 감사우수공무원 선정·시상, 물의사례 처분

사 업 명
차량및물품관리 (7132-349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총무과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49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차량및물품관리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차량및물품관리	1,455	1,500	1,500	1,591	1,500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노후한 행정장비(차량)의 적기교체로 선거지원 업무능률 제고
- 내용연수가 경과한 냉·난방기, 복사기 등 보급 및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

2) 사업개요

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(차량의 교체)
- 물품관리법 제16조(물품의 정수관리)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(물품의 정수관리)
- 조달청 고시 제2018-15호(정수관리 대상물품) 및 제2018-14호(내용연수)

② 추진경위

- ('73.~)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

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및 시·도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 : 공용차량, 정수물품 등 교체시기 도래 시 물품 구입

사 업 명
전산운영경비(정보화) (7132-35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정보자료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5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전산운영경비(정보화)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	
전산운영경비(정보화)	10,306	10,746	10,746	14,391	12,828	2,082	19.4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정보시스템 유지·관리)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·보수 및 도입,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지원 등 기타 전산운영경비
- (정보통신망 운영개선) 선관위 업무처리 및 재해복구센터 통신망 회선비, 사전투표용 유·무선통신장비 구입(리스)비
- (정보기반보호 강화)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선거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
- (전산센터 이전설비) 이전 전산센터의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(리스)비
- (재해복구센터 구축운영) 재해·재난 시 안정적 선거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장비 구입(리스)비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
-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(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) 및 제4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
- 전자정부법 제3조(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)
-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(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) 및 제14조(복구조치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

②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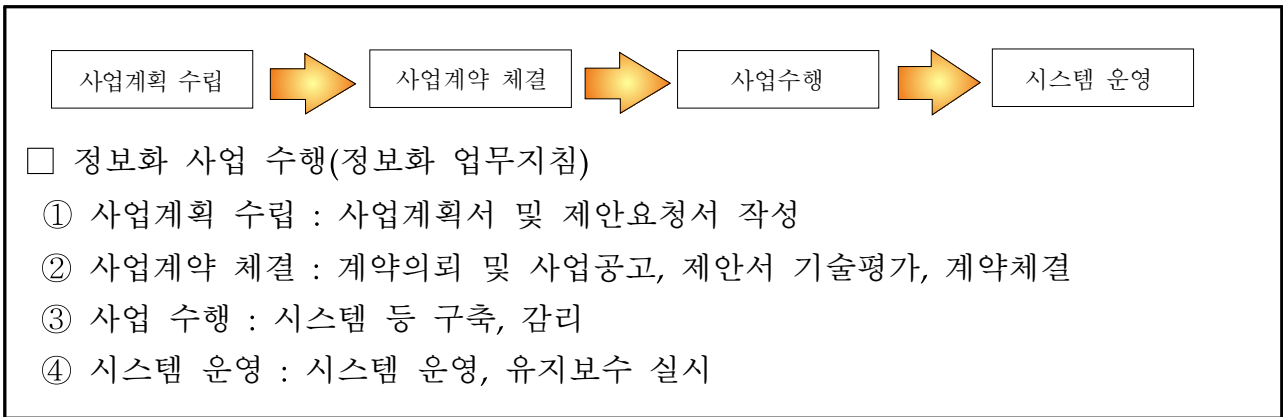
-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
(’05년 : 선거정보통신시스템, ’12년 : 재외선거관리시스템)
- ’12년 위원회 자체통신망(선거정보통신망) 구축
- ’13년 재해복구시스템(통합명부시스템) 구축을 위한 ISP 수립
- ’16년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
- ’17년 선거정보통신망 고도화
- ’18년 사전투표 유·무선통신장비 국가표준(KS) 제정 고시
- ’20년 전산센터 이전 대비 환경구축 및 이전

- '21년 재해복구센터 구축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전산장비 1,976식(주전산기 158식, 통신장비 911식, 보안장비 40식, 부대장비 36식, 소프트웨어 888식), 업무용PC 6,160대, 통신망 332회선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위원회운영 (7132-35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51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위원회운영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위원회운영	1,487	1,849	1,849	2,144	1,849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위원회운영)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
 - * 중앙, 17개 시·도, 249개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별 운영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(설치), 제4조(위원의 임명 및 위촉), 제12조(위원의 대우)
-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(실비보상)
-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(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), 제5조(안전검토수당)

② 추진경위

-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
-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정
-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사업 추진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 : 위원회의 개최시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

사 업 명
선거연수원운영 (7132-35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연수원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52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선거연수원운영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	
선거연수원운영	3,665	1,923	1,923	2,076	2,076	153	8.0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청사 유지·관리) 동 내역사업은 청사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·관리와 교육·연수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청사관리원(시설관리·환경미화·식당보조)을 채용·관리하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·보수 및 시설관리 비품을 확충·보완하는 사업임.
- (교육환경 개선) 동 내역사업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물의 개·보수 및 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·교체하는 사업임.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정부청사 관리규정 제3조(청사의 수급 및 관리)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(선거연수원)
-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(선거연수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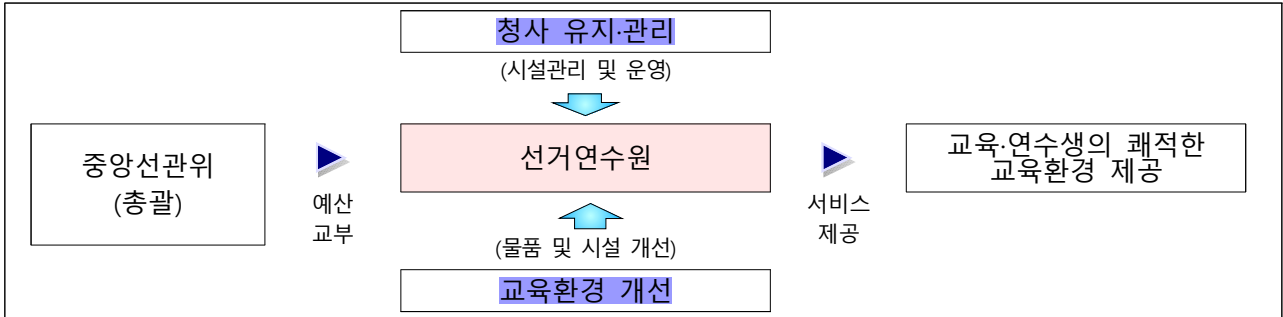
② 추진경위 - 사업 시작년도, 추진배경, 부처별 중점과제, 대통령 공약사항 등

- ('92) 11. 11. 선거연수원 설치근거 마련(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)
- ('96) 5. 10. 선거연수원 설치(종로)
- ('13) 5. 23. 수원청사 유상관리전환 계약체결
- ('17) 11. 수원청사 개원
- ('17~'18)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집기 등 설비
- ('19~'21) 노후화된 기존 건물·부지 정리 및 교육공간 조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안전관리 강화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선거연수원)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청사관리 (7132-35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 기획국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2	354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기관운영지원	청사관리

□ 사업 성격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청사관리	21,197	21,220	21,220	24,048	22,331	1,111	5.2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

-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·관리(1963년 선관위 창설)
-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
- 위원회 업무 보조를 위한 사회복지무요원 관리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
-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·관리 등에 관한 규정
- 병역법 제31조, 제75조의3, 병역법 시행령 제62조, 제153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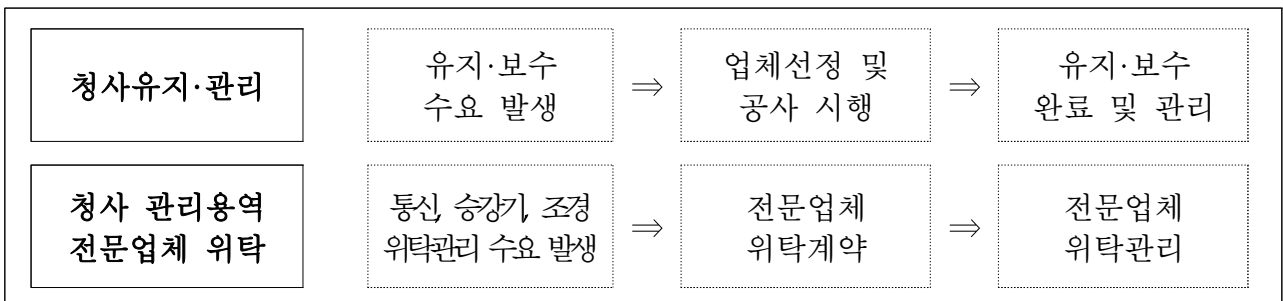
② 추진경위

-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·관리로 적정한 선거업무 환경 조성
- 노후청사 보수로 청사 수명 연장
- 사회복지무요원 봉급, 급량비, 여비 등 필수경비 지원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온라인투표기반조성(정보화) (7136-50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선거정책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선거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6	50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선거행정정보화	온라인투표기반조성(정보화)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온라인투표기반조성 (정보화)	639	531	531	2,009	531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온라인투표 도입기반 조성) 온라인투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, 기타 사업추진
- (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) 온라인투표 위탁운영 및 장비 유지보수 등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직선거법」 제278조(전산조직에 의한 투표·개표)
- 「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」 제22조(전산조직에 의한 투·개표)
- 「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제69조(전자투표 및 개표)
- 「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 규칙」 제17조(전자투표·개표 등)
- 「주민투표 관리규칙」 제10조(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의 준용)
- 「주민소환 관리규칙」 제33조(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)

② 추진경위

- '04. 7월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
- '05. 11월 ~ '07. 8월 터치스크린 투표 시범시스템 개발
- '10년 ~ '13년 터치스크린투표장비 성능향상(투표기 900대)
- '13년 온라인투표 서비스 제공(KT와 MOU 체결)
- '14년 터치스크린투표장비 성능향상(명부단말기 260대)
- '15년 터치스크린투표장비 성능향상(명부단말기 330대)
- 2006. 10. ~ 현재 : 당내경선 등 위탁선거에 온라인투표 및 터치스크린투표장비 활용
- '18년 공공영역 대상 서비스 제공목적 온라인투표시스템 자체구축
- '20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
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- 온라인투표 이용절차
- 서비스이용신청(이용기관)→협약체결 및 이용승인(관할위원회)→투·개표관리(이용기관)
- 전자투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 및 담당자 교육·훈련 비용 집행
- 온라인투표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을 통한 안정적 관리 비용 집행

사 업 명
선거정보시스템구축(정보화) (7136-52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거위	정보자료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6	523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선거행정정보화	선거정보시스템구축(정보화)

□ 사업 성격 (공통요구자료 II-1 작성유의사항 4. 참조, 해당하는 사항에 “○” 표시)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(B-A)	(B-A)/A
선거정보시스템구축 (정보화)	5,546	6,144	6,144	7,207	6,902	758	12.3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(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) 동 내역사업은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정보화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구축 및 분야별 전문기술지원, 전문가를 통한 성능 개선 등을 하는 것임.
- (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) 동 내역사업은 최적의 업무처리 환경 구현 및 장애 사전예방 등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문서 공유 기능 강화 및 최신 기술 표준 적용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임.
- (선거전용통신망 구축) 동 내역사업은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·운영을 통해 사전투표의 안정성·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임.
- (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) 동 내역사업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데이터의 공익 활용성 증대를 위해 선거데이터 및 개방포털시스템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진단 등을 수행하는 것임.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

- 공직선거법 제44조의2(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)
- 공직선거법 제148조(사전투표소의 설치)
- 공직선거법 제14장의2(재외선거에 관한 특례)
- 공직선거법 제274조(선거에 관한 신고 등)
- 전자정부법 제1조(목적)
-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(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)
-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(개인정보 영향평가),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(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)
-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, 제22조(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), 제24조(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)
-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-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(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)
-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(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)

②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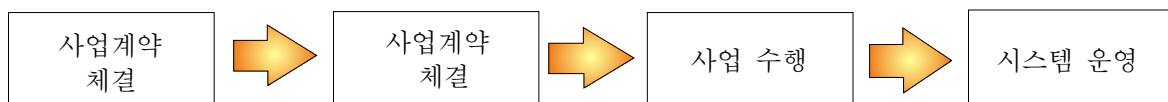
- 2007년 :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중.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(ISP) 수립
- 2008년 : 위원회 정보화 통합을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
- 2009년 : 재외선거인 선거권부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(2. 12.)
- 2009년 : 재외선거 및 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(12. 24.)
- 2012년 : 통합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도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(2. 29.)
- 2014년 : 전국단위 최초 사전투표의 완벽한 관리(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)
- 2015년 :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.신청 허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(8. 13.)
- 2015년 : 영구명부제 및 사전투표 전용통신망 구축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(12. 24.)
- 2016년 : 제도개선 반영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
- 2017년 :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의 완벽한 관리
- 2018년 :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 및 재.보선 확정상황 공개
- 2019년 :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마련
- 2020년 : 위원회 개방포털시스템(LOD 서비스 포함) 구축·운영
- 2021년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

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(계속)
- 사업규모 : 해당없음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□ 정보화 사업 수행(정보화 업무지침)



- ① 사업계획 수립 :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
- ② 사업계약 체결 : 계약의뢰 및 사업공고, 제안서 기술평가, 계약체결
- ③ 사업 수행 : 시스템 등 구축, 감리, 검수
- ④ 시스템 운영 : 시스템 운영, 유지보수 실시

사 업 명
예비금 (7137-430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0	06	기획조정실	00	010	011
명칭	일반회계	중앙선관위	기획국		일반공공행정	입법및선거관리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7100	7137	430
명칭	선거관리행정지원	예비금	예비금

□ 사업 성격

신규	계속	완료	예비타당성 실시여부	총사업비 관리대상	총액계상 예산사업	사업소관 변경정보
						2021예산 시 소관
	○					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0년 결산	2021년 예산		2022년 예산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(A)	추경	요구	확정(B)		
예비금	196	260	260	260	260	-	-

나. 사업설명자료

1) 사업목적·내용

-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·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원

2) 사업개요

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(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)
- ② 추진경위
 - 선거관리위원회·국회·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경비
 - 평소 예산지원이 부족한 중앙, 17개 시·도, 249개 구·시·군위원회의 공명선거 추진활동 경비 등에 활용

□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계속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중앙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

3) 사업 집행절차

- 예측하지 못한 소요, 부득이한 사업추진 소요 등 발생 시 집행